

《 연 말 정 산 안 내 》

· 개 요 :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 다음에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소득세액을 확정, 연간 징수한 세액
과 비교하여 환급 및 추가 징수 납부하는 절차임.

· 준 비 서 류

- ① 주민등록등본 - 신규가입자, 공제대상 가족의 변동있는자.
- ② 전근무지 있는자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③ 가족관계부 - 주민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인 적 공 제

항 목	공 제 금 액	공 제 대 상
기본공제	1,500,000(1인당)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0세이하, 60세이상) (장인, 장모도실제부양시 공제)
추가공제	2,000,000(1인당)	기본공제 중 장애인
	1,000,000(1인당)	경로 우대자 (70세이상자)
	500,000(1인당)	배우자있는 부녀자, 배우자 없는 부양가족있는 여성세대주
다자녀추가공제자	1,000,000	기본 공제자녀 2인 (1인초과시 200만원씩추가)
자녀 양육비 공제	1,000,000(1인당)	6세이하 직계비속
출생 · 입양 공제	2,000,000	과세기간내 1인당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인적공제 대상 아님.
공제 대상여부는 주민등본 · 가족관계부 확인 후 판단

·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 가입한 연금 보험료 - 전액 공제

· 보험료 공제

① 국민건강 보험료, 고용보험료 - 전액공제

② 기타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의료비 공제

의료비 지출액 : 총 급여의 3% 초과액 - 700만원 한도(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한도 없음)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보청기
안경, 콘택트렌즈 (1인당 50만원이내)

·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 - 전액공제(대학원 교육비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연령제한 없음)

① 유치원, 영유아, 취학 전 아동 : 1인당 연300만원(체육시설추가)

② 초, 중, 고등 : 1인당 연300만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수업포함)

③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 1인당 연900만원

· 주택자금 공제

① 주택마련저축공제 - 300만원 한도(저축불입액의 40%)

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300만원한도(원리금상환액의 40%)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공제(이자상환액 100%) - 1,000만원
(상환기간15년이상)1,500만원(상환기간30년이상)(①+②+③합계액
1,000만원(1,500만원))

④ 주택월세액공제 - 배우자나 부양가족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
택세대주(월세액의 40%)

· 기부금 특별 공제

- ①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 금액 범위 내 100% 공제
- ② 특례기부금 - (근로소득 금액 - 법정 기부금) × 50%공제
- ③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 금액 - 법정 기부금 - 특례 기부금) × 30% 공제 (종교단체기부금 10%)

·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공제

- ① 개인연금저축 - 저축불입액의 40% (연72만원 한도 공제)
- ② 연금저축 - 저축불입액 전액 (연400만원 한도 공제)
- ③ 퇴직연금 불입액 - 연금저축 과 합해서 400만원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소득 공제

- ① 신용카드, 직불카드, 학원비지로납부금액 + 현금영수증+기명식선불카드
- ② 초과금액 = {① - (총 급여액 × 25%)} × 20% (직불·선불카드25%)
- ※ 한도액 : 총 급여액 ×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금액

· 장기주식형 저축소득공제 : 분기별 300만원이내 불입금

· 1차년도 : 불입액의 20% 2차년도: 10% 3차년도 :5% (240만원한도)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 해당연도불입금액 (300만원한도)

· 주택마련저축공제 :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불입금액 40% (300만원 한도)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 투자금액 10%(종합소득금액 30%한도)

· 고용유지 중소기업근로자 :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 50% 소득공제 (연 1,000만원한도)

·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

- ①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 최초근로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 감면세액 = 근로소득산출세액 × $\frac{\text{감면대상근로소득금액}}{\text{근로소득 금액}}$

②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50만원 한도
일용근로자는 산출세액의 55%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당해 연도 이자상환액의 30% 공제 - 농특세 부과됨
-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 정당(후원회, 선관위)에 기부한 정치자금
 - 기부한 정치자금(연 10만원¹⁰⁰) - 10만원 초과는 기부금 공제

110

◎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① 소득공제 자료 조회 출력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연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주택마련 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극식형저축

② 공인 인증서 필요

③ 소득 공제 자료제공 동의

- 근로자가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 조회시 사전 가족 동의
- 부양가족은 휴대폰, 신용카드, 팩스활용 홈페이지에서 동의 또는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신청서 작성, 신분증사본 첨부 가까운 세무서제출
- 20세미만 자녀 동의절차 없이 조회가능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세무사 김기인 사무소

TEL. 755-8001 FAX. 755-8002

연말정산 간소화

<http://www.yesone.go.kr/login/raeaw001.jsp>

소득공제자료조회/출력(팝클릭)

공인인증서 로그인

-치료화면 참고 주항색택(모두 클릭)

보험료클릭,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연금저축,주택저축,주택마련저축,

중요함... 조회한 항목 한번에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저장해서... 파일자체로 주세요..(USB 저장해서,세무사사무실 줄것임)

예제)

HOME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조회

> 귀속연도 2011년 > 성명 정지숙 > 주민등록번호 640122-2+*****

조회한 항목 한번에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Download Inquired Item)

 조회한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 (Print Inquired Item)

보험료 (Insurances)	의료비 (Medical Expenses)	교육비 (Education Expenses)	신용카드 (Credit Card)	직불카드 (Debit Card)	현금영수증 (Cash Payment)
6,136,150	67,100	704,800	조회액	0	112,000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Personal Savings)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Mentoring Fee For Small Size Enterprises)	주택저금 (Housing Funds)	주택마련저축 (Home Purchasing Savings)	장기저축형저축 (Long Term Stock Invested Savings)	기부금 (Contribution)
조회액	조회액	조회액	1,800,000	0	0

주택마련저축 기본내역 (본인공제항목)

 전자문서 다운로드

 인쇄하기

> 귀속연도 2011년 > 주택자 정지숙(640122-2+*****)

취급기관 계좌번호 저축구분 가입일자 납입금액 개

주택마련저축 안내

 • 공제대상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 단, '09.12.31 이전 청약저축(액 120만원 미만) 전가조항(마련저축(부기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2011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세대주 여부	세대주 <input type="checkbox"/> , 세대원 <input type="checkbox"/>	국적	(국적 코드 :)
근무기간	. . . ~ 2011. . .	감면기간	~
거주구분	거주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비거주자 <input type="checkbox"/>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전년과 동일 , 변동 ※ 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코드 관계	성명	인적공제 항목						자료 구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기본 공제 부녀 자	경로 우대	출산 · 입양	장애 인	6세 이하 자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포함)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기부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내외 국인	주민등록 번호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 (다자녀: 명)							국세청							
							기타							
0		○					국세청							
1	(근로자본인)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1.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 참고사항

1.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법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법 §50 ③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법 §50 ③ 가)	2
배우자 (소법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소법 §50 ③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법 §50 ③ 나)	5
형제자매 (소법 §50 ③ 다)	6	수급자(코드 1~6제외) (소법 §51 ③ 라)	7	위탁아동 (소법 §52 ③ 마)	8

- *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 관계코드(4~6)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 2. 연령기준
 - 가. 경로우대:(1941년).12.31. 이전출생(만70세 이상:100만원공제), 나. 6세이하자:(2005년). 1. 1.이후출생(만6세 이하:100만원공제)
- 3. 부녀자 공제란에는 여성근로소득자 본인에 한해 적용여부를 표시합니다.
- 4. 내, 외국인: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기재하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5. 다자녀란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 자녀수를 적습니다.
- 6. 신용카드 등에는 학원비 지로납부액이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직불카드 등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2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II.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퇴직연금 등)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퇴 직 연 금	종(전)근무지	보험료		작성방법 참조		
			주(현)근무지	보험료		작성방법 참조		
		연금 보험료 계						
III. 특 별 공 제	보험료	국민 건강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보험료 계						
의료비	본인.65세이상자.장애인 의료비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의료비 계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액		
	취학전 아동	(0 명)		유치원비.학원비등		1인당 300만원		
	초.중.고등학교	(0 명)		공납금		1인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0 명)		공납금		1인당 900만원		
	장애인	(0 명)		특수교육비		전액		
	교육비 계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월세액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자금 공제액 계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분 제외)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법정 기부금			기부금액				
	특례기부금(공익법인신탁 제외)			기부금액				
	공익법인신탁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기부금액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기부금액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기부금액				
	기부금공제액 계							

